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2. 9.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11. 15. 차해영 의원 외 9명

나. 회부일자 : 2024. 11. 18.

다. 상정일자 : 제27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4. 11. 2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차해영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
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기준을 완화하고 대
상을 추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지원하
고자 함.

나. 주요내용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추
가하여 규정(안 제3조)

3. 검토보고 [장홍용 전문위원]

- 본 개정 조례안은 차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추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 제12호 중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을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연장하고,
 - 같은 조 제13호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와 제14호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각각 신설하는 것임
- 본 개정조례안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범죄사건 처리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3개월 이내 처리되는 사례보다 약 2배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었음.

<최근 3년(2021년~2023년) 범죄사건 처리기간>

(단위: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3개월 이내	3개월 이상	3개월 이내	3개월 이상	3개월 이내	3개월 이상
계	172,031	368,644	173,085	437,636	173,061	390,611
강력범죄	4,801	7,248	5,251	8,645	5,440	7,555
절도범죄	11,234	14,069	13,213	17,473	14,058	15,544
폭력범죄	36,854	45,962	40,612	55,727	37,036	47,821
지능범죄	39,748	160,892	35,790	168,614	41,758	165,732
풍속범죄	4,570	8,972	5,042	10,323	5,575	9,524
특별경제범죄	6,897	20,134	6,994	26,143	7,860	26,781
마약범죄	1,466	3,895	1,686	4,389	2,486	5,439
보건범죄	7,808	10,512	7,968	32,422	1,893	8,626
환경범죄	786	1,270	676	1,781	754	1,297
교통범죄	23,055	18,004	19,894	19,383	18,860	16,761
노동범죄	140	343	96	378	183	517
안보범죄	63	381	67	397	114	360
선거범죄	73	145	697	1,962	280	695
병역범죄	296	377	401	415	860	746
기타범죄	34,240	76,440	34,698	89,584	35,904	83,213

※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경찰청 범죄통계

- 이에, 범죄사건의 처리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기간을 확대하여 각종 범죄피해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본 조례의 입법취지에

타당하다 할 것이며, 아울러 2022년 8월 경기도 수원시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과 같은 해 7월 의정부시 가족의 극단적 선택은 과다채무가 큰 요인 중 하나였음.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 위기가정 등 자살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자료와 연계해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위해 현실에 맞는 위기상황을 인정하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 종합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을 상위법에 맞게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긴급복지 위기 상황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동 단위 단체와 기관 등에 긴급복지대상자를 찾기 위한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1. 관계법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6. 11.>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애”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2. 타 자치단체 조례현황

연번	조례명	제·개정일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2017.9.28.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2023.7.20.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2024.5.23.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2024.5.9.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인정에 관한 조례	2020.1.2.
6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2021.9.29.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2023.11.16.
8	대구광역시 군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2023.6.30.
9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2023.3.8.
10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2023.8.7.
11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2023.9.27.
12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2024.4.9.
13	연천군 긴급복지지원조례	2024.5.2.
14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2018.8.24.
15	의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2017.9.22.
16	인천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2017.9.29.
17	천안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2.21.
18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2023.7.6.

3. 타 자치단체 조례 범죄피해자 위기상황 인정기간

연번	자치단체	범죄피해자 기간	기간제한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조례상 제한없음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조례상 제한없음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조례상 제한없음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개월 이내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개월 이내
6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경찰관서로 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범죄피해로 인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조례상 제한없음
7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조례상 제한없음

연번	자치단체	범죄피해자 기간	기간제한
8	대구광역시 군위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 그 <u>피해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년 이내
9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u>피해가 인정된 날부터 1년 이내</u> 인 사람으로 범죄피해로 인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년 이내
10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u>피해가 인정된 날부터 1년 이내</u> 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	1년 이내
11	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u>피해가 인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u> 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곤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동일한 범죄 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1년 이내
12	시흥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u>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외)	1년 이내
13	연천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 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 받은 사람 중 그 <u>피해가 인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u> 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곤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동일한 범죄 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1년 이내

연번	자치단체	범죄피해자 기간	기간제한
14	울릉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u>피해 발생일</u> <u>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u> , 범죄피해로 인하여 구호가 필요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년 이내
15	의성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u>피해발생일</u> <u>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년 이내
16	인천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서로부터 통보 받은 사람 중 그 <u>피해 발생일</u> <u>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 이내
17	천안시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u>피해가 인정된 날</u> <u>부터 1년 이내</u> 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	1년 이내
18	함양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u>피해 발생일로</u> <u>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년 이내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